

업무협약서

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기독교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.)는 상호 호혜의 원칙아래 문화, 교육, 복지 등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부협력 사항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 간의 공동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원칙)

1.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상대방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2. 협력분야 사업 진행 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계획하여 관리 운영한다.

제3조(협력분야) 양 기관은 다음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

1. 문화, 예술, 체육, 외국어 등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
2. 교육 관련 강사 협력 및 지원(강사양성 프로그램 공유)
3. 대학생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과정 교류 및 협력
4. 문화, 예술, 체육 행사 공간 및 장비의 교류 및 협력
5. 양 기관의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
6. 지역발전과 50+세대와 노인복지프로그램 연구 활동 교류 및 협력
7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추진 협력

제4조(비밀유지)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이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.

제5조(협약기간)

1.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2.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6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약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 등 단순 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도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7조(신의성실의 원칙) 협약기관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역할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하며,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및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7월 31일

대표이사 이 경 희

총장 이 강 평

이 경 희

이 강 평